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지급금 부정수
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 상금은 <u>1억원</u> 을 지급한도액으 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1. ~ 3. (생 략)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 <u>2억원</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072